

성남 도시관리계획(분당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성남 도시관리계획(분당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2025.

성 남



가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한 사항

1)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)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: 변경없음

나) 분당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: 변경

(1)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
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: 변경없음

(2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: 변경없음

(3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: 변경없음

(4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
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: 변경

□ 공공건축물(노유자시설, 수련시설)

도면 번호	위치 (지번)	구분	계획내용		비고
			기 정	변 경	
북4	야탑동 222	용 도	· 종합사회복지관 · 교육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	· 종합사회복지관 · 교육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 · 공공업무시설 및 그 부대시설	공공업무시설 및 그 부대 시설 추가
		건폐율	-	-	
		용적률	250% 이하	250% 이하	
		높이	5층 이하	5층 이하	
		배치	-	-	
		형태	-	-	
		색채	-	-	
		건축선	일부 건축한계선 지정(2m)	일부 건축한계선 지정(2m)	

□ 변경사유서

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• 노유자시설·수련시설(북4) 건축물의 용도 변경 (기정) 종합사회복지관, 교육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 (변경) 종합사회복지관, 교육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, 공공업무시설 및 그 부대시설	• ‘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’ 사용을 위한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

(5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(가)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

(가)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

구분	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	비고		
기정	제4편 공공건축물, 제3절 건축물에 관한 사항, 제101조 (건축물의 용도) ① ~ ⑩ <생략>			
변경(안)	제4편 공공건축물, 제3절 건축물에 관한 사항, 제101조 (건축물의 용도) ① ~ ⑪ <생략> ⑫ 사회복지시설용지(야탑동222번지)의 건축물 용도는 아래표에 따른다. (신설)			
	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용도계획</th></tr></table>		구 분	용도계획
	구 분		용도계획	
허용용도	· 종합사회복지관 · 교육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 · 공공업무시설 및 그 부대시설			

(6)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